

#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의결주문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현행 실무를 반영하여 아동보호심판규칙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보완함으로써, 피해 아동과 가정구성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검사가 아동학대행위자를 불기소하는 경우에만 임시조치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행위자를 기소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결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집행 후 행위자의 거주지 및 현재지 변경 시 수탁기관 변경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3조제5항, 제55조제6항, 제91조제6항, 제97조제6항 신설)
-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불처분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

정된 경우에도 판사가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임시조치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2항)

-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보호처분 항고 취하 시 영·유아 등 저연령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아동의 동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비함(안 제59조제2항 단서 신설)
- 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재항고심에서도 파기자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67조제2항 단서 신설)
-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변호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취하 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피해아동의 동의 없는 청구 취하를 인정하되 이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취하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관 조사를 통한 피해아동의 의사 확인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함(안 제7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 수사 중인 사건의 비밀유지, 피해아동 등의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행위자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서 부분 송달 시 개인정보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76조제3항)
- 피해아동의 보조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취하 간주규정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피해아동 보호의 공백 발생을 방지함(안 제77조제4항 단서 신설)
-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보조인, 변호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해아

동보호명령 결정에 대한 항고 취하 시 영·유아를 포함한 저연령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아동의 동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비함  
(안 제100조제2항 단서 신설)

#### 4.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소년보호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 사건은 위 법률 별표 3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의 임시조치 청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행위자”를 “아동학대행위자(이하 “행위자”라 한다)”로 한다.

③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임시조치를 결정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취소·변경 신청 또는 법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에 따른 변경 신청 및 청구를 할 수 있고, 당해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은 법 제22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취소·변경 및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연장을 할 수 있다.

1.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전인 경우

2.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아니하고 기소된 경우

3.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아니하고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리기일에 결정서를 미리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결정의 고지 후에 결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수탁기관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수탁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건기록”을 “사건기록(집행감독사건 기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변호사 또는”을 각각 “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⑤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검사는 그 취지를 행위자 및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할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 수탁·유치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후단 중 “송달 기타”를 “송달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 또는 전화 조사 등 적당한 방

법으로 면접·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심리기일의 통지) ① 피해아동등·보조인·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 등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는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팩스·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방법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한 경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는 그 방법과 날짜를 소송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중 “12월말”을 “12월 말”로, “수탁기관”을 “임시조치 집행을 위한 수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시설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치료와 환경의 조정 및 성행의 교정에 적당한 곳이어야 하며, 해당 시설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려면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원장·지원장은 언제든지 조사관이나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탁기관이 행위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보고하도록 하고, 행위자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3조제3항 중 “임시조치결정이 고지된”을 “임시조치 결정이 통지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결정이 있는 다음 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임시조치 결정을 한 법원·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행위자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임시조치 결정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3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불처분 결정으로 종결할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2항제8호 중 “보조인등”을 “보조인 등”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전단 중 “취소하여야 한다”를 “취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수용중”을 “수용 중”으로, “모사전송기 기타”를 “팩스 그 밖의”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12월말”을 “12월 말”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집행담당자으”를 “집행담당자”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당해보호처분”을 “당해 보호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법 제3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다음 행위

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보호처분 결정을 한 법원·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행위자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보호처분 결정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59조제1항 본문 중 “취하함”을 “취하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피해아동의 나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수용중인 행위자의 항고제기)”를 “(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제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용중”을 “수용 중”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수용중”을 “수용 중”으로 한다.

제6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한 경우에 그 기록 및 항고법원과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결정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에 대하여 직접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피해아동의 나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취하할 수 있다.

제7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재판장은 피해아동의 의사 확인 등을 위하여 조사관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제74조제2항 후단 중 “송달 기타”를 “송달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 또는 전화 조사 등 적당한 방법으로 면접·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제76조제3항 후단 중 “주거 또는 주소”를 “주거,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로 한다.

제77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피해아동, 청구인이 제76조에 따라 소환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피해아동, 청구인 모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75조제2항에 따라 심리기일을 통지받은 피해아동의 보조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12월말”을 “12월 말”로, “수탁기관”을 “피해아동보호명령 집행을 위한 수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시설은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하기에 적당한 곳이어야 하며, 해당 시설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려면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원장·지원장은 언제든지 조사관이나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탁기관이 피해아동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보고하도록 하고, 피해아동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7조 제6항 후단 중 “「의료급여법」,”을 “「의료급여법」이나”로, “및”을 “또는”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이라고”를 “이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선정함에 있어서”를 각각 “선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교부함으로써”를 “교부하는 것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집행담당자으”를 “집행담당자”로 한다.

제9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변경 신청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변경·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91조제2항 중 “취소·변경·연장함에 있어”를 “취소·변경·연장할 때”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취소·변경·연장결정”을 “취소·변경·연장 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이를 통지”를 “통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피해아동보호명령 변경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89조를 준용한다.

⑥ 법 제47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5호의2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다음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한 법원·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92조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결정을 통지”를 “그 결정을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라”로, “행위자에게 이를”을 “행위자에게는 임시보호명령을”로 한다.

제94조 중 “이를 병과”를 “병과”로 한다.

제95조의 제목 “(이송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을 “(이송 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의 취소·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임시보호명령의 취소·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97조제2항 중 “취소·변경함에 있어”를 “취소·변경할 때”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지된”을 “통지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이를 통지”를 “통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임시보호명령 변경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89조를 준용한다.

⑥ 법 제52조, 제47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5호의2의 임시보호명령이 있는 다음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임시보호명령을 한 법원·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임시보호명령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99조를 삭제한다.

제100조제1항 본문 중 “취하함”을 “취하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피해아동의 나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3조 중 “제57조”를 “제57조, 제58조”로 한다.

제109조제1항 중 “집행력있는”을 “집행력 있는”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관할) ① 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가정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와 같이 한다. 다만, 서울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은 위 별표 5에 규정된 <u>소년보호사건의 관할구역</u>으로 한다.</p> <p>2. (생략)</p> <p>② 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은 위 법률 별표 3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한다(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이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결정한 사건</p>	<p>제2조(관할) ① ----- ----- ----- ----- -----.</p> <p>1. ----- ----- ----- ----- -----.</p> <p>----- <u>가정보호사건</u> ----- -----.</p> <p>2.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은 위 법률 별표 3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p>

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전에는 당해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취소·변경신청 또는 법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에 따른 변경 신청 및 청구를 할 수 있고, 당해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은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변경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임시조치를 결정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취소·변경 신청 또는 법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에 따른 변경 신청 및 청구를 할 수 있고, 당해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은 법 제22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취소·변경 및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연장을 할 수 있다.

1.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전인 경우
2.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아니하고 기소된 경우
3.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⑥ 검사가 사건을 기소, 불기소 또는 소년부에 송치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검사는 그 취지를 행위자 및 피해아동 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관은 행위자·피해아동등 및 가정구성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관찰·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검사는 그 취지를 행위자 및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할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 수탁·유치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조(조사의 방법) ① -----  
-----  
-----  
-----  
-----  
-----  
----- 송달이나 그 밖의 -----  
-----.

<신 설>

② · ③ (생략)

<신 설>

② 조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 또는 전화 조사 등 적당한 방법으로 면접·심문 등을 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7조의2(심리기일의 통지) ① 피해아동등·보조인·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 등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는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팩스·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방법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한 경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그 방법과 날짜를 소송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수탁기관의 지정) ① 법원

제29조(수탁기관의 지정) ① ----



다.

제33조(임시조치의 취소·변경)

①·② (생략)

③ 임시조치의 취소·변경은 임시조치결정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④ (생략)

<신설>

제36조(심리의 개시) ①·② (생략)

③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33조(임시조치의 취소·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임시조치 결정이 통지된 -----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결정이 있는 다음 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임시조치 결정을 한 법원·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행위자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임시조치 결정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36조(심리의 개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불처분 결정으로 종



하여야 한다.

제49조(감호·치료·상담위탁) ①  
법원장·지원장은 매년 12월말  
까지 법 제36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수탁기관을 지정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54조(집행상황보고) ① 판사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  
조제1항이 정한 집행담당자으  
로 하여금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  
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5조(보호처분의 변경·취소·  
종료) ① 법 제40조제1항·제41  
조·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  
처분의 변경·취소·종료의 청  
구는 당해보호처분을 결정한 법  
원에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판사는 보호처분을 변경·취  
소·종료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피해  
아동·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  
을 소환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

-----.

제49조(감호·치료·상담위탁) ①  
----- 12월 말-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4조(집행상황보고) ① -----  
-----  
----- 집행담당자로-  
-----  
-----.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보호처분의 변경·취소·  
종료) ① -----  
-----  
-----  
--- 당해 보호처분-----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사, 심리할 수 있으며, 보호처분의 종류를 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신설>

제59조(항고의 취하) ① 법정대리인이 있는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이 항고를 취하함에는 각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행위자의 동의를 얻

-----  
-----  
-----  
----- 각 호 -----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3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다음 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보호처분 결정을 한 법원·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행위자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보호처분 결정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59조(항고의 취하) ① -----  
-----  
----- 취하할 때 -----  
-----.  
-----.  
② -----  
-----



야 한다.

②·③ (생략)

제67조(재항고법원의 재판) ① (생략)

② 재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3조(청구의 취하 등) ① (생략)

②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동의를 얻어 제1심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7조(재항고법원의 재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다만, 대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한 경우에 그 기록 및 항고법원과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결정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건에 대하여 직접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3조(청구의 취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단, 피해아동의 나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취하할 수 있

<신 설>

③·④ (생략)

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74조(조사의 방법) ① (생략)

② 조서관은 피해아동·행위자 및 가정구성원,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관찰·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다.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재판장은 피해아동의 의사 확인 등을 위하여 조서관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⑥ 제4항 -----  
-----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74조(조사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송달  
이나 그 밖의 -----  
--.

③ 조서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 또는 전화 조사



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87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①  
법원장·지원장은 매년 12월말  
까지 관할구역 또는 인접관할구  
역 내의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소 중에서 법 제  
47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5  
호의2의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  
관은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  
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하기에  
적당한 곳이어야 하고 이를 지

④ 피해아동, 청구인이 제76조  
에 따라 소환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피해아동, 청구인 모두 출  
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아동  
보호명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75조제2항에 따라  
심리기일을 통지받은 피해아동  
의 보조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7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① -  
----- 12월 말-----  
-----  
-----  
-----  
-----  
-----  
-----  
-----  
----- 피해아동보호명령 집행  
을 위한 수탁기관-----  
-----.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시설은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보  
호하기에 적당한 곳이어야 하

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원장·지원장은 언제든지 조사관이나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탁기관이 피해아동의 보호에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⑤ (생략)

⑥ 법원은 제1항의 수탁기관에 그 집행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 피해아동 및 그 보호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⑦ (생략)

제88조(수탁 연고자 등의 선정)

① 판사는 법 제47조제1항제6호의 가정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

며, 해당 시설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려면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원장·지원장은 언제든지 조사관이나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탁기관이 피해아동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보고하도록 하고, 피해아동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  
-----  
----- 「의료급여법」이나 -----  
----- 또는 -----  
-----.

⑦ (현행과 같음)

제88조(수탁 연고자 등의 선정)

① -----  
-----

는 피해아동의 친족 기타 피해 아동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 또는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이하 “연고자 등”이라고 한다) 중에서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고 피해아동의 보호에 적당한 환경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제1항에 따라 수탁 연고자 등을 선정함에 있어서 연고자 등의 직업, 소득, 성행, 범죄경력, 가정환경, 피해아동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미리 연고자 등의 의견을 상당한 방법으로 들어야 한다.

③ 판사는 제1항에 따라 수탁 연고자 등을 선정함에 있어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에게 연고자 등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89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지휘 또는 집행위임은 결정서 등

-----  
-----  
-----  
-----이라-----  
-----  
-----  
-----  
-----  
-----  
-----.

② -----  
----- 선정할 때에는 -----  
-----  
-----  
-----  
-----  
-----  
-----.

③ -----  
----- 선정할 때에는 -----  
-----  
-----  
-----  
-----  
-----.

제89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① -----  
-----

본을 법 제50조제1항이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② 판사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법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집행담당자으로 하여금 피해아동 보호명령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변경·연장)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변경신청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연장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그 신청서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변경·연장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변경·연장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행위자·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리할 수 있다.

③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변경·연장결정은 피해아동보

-----  
----- 교부하는 것으로  
-----.

② -----  
----- 집행담당자로-----  
-----  
-----.

제9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변경·연장)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변경 신청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변경·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  
취소·변경·연장할 때 -----  
----- 경우-----  
-----  
-----.

③ ----- 취소·변경·연장 결정-----

호명령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해아동, 신청인 및 행위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92조(준용규정) 법 제47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 같은 조 제4항의 임시후견인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26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제93조(임시보호명령) ① 법 제52

-----  
----.

④ -----  
-----  
-- 통지-----.

⑤ 피해아동보호명령 변경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89조를 준용한다.

⑥ 법 제47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5호의2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다음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한 법원·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92조(준용규정) -----  
-----  
----- 제5항-----  
-----  
-----.

제93조(임시보호명령) ① -----

조에 따른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59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제94조(임시보호명령의 병과)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95조(이송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 (생략)

제97조(임시보호명령의 취소·변경) ①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의 취소·변경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그 신청서에는 임시보호명령을 취소·변경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임시보호명령을 취소·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

-----  
-----  
-----  
-- 그 결정을 통지-----.

② 제1항에 따라 -----  
-----  
-----  
-- 행위자에는 임시보호명령을  
-----  
-----.

제94조(임시보호명령의 병과) --  
-----  
----- 병과-----  
----

제95조(이송 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 (현행과 같음)

제97조(임시보호명령의 취소·변경) ①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의 취소·변경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임시보호명령의 취소·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 취소·변경할 때 -----

정하는 때에는 행위자·피해아  
동·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  
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리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변경  
은 임시보호명령이 고지된 때부  
터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해아동, 신청인 및 행위자에  
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99조(임시보호명령에 대한 항

----- 경우-----  
-----  
-----  
-----.

③ -----  
----- 통지된 -----  
-----.

④ -----  
-----  
-- 통지-----.

⑤ 임시보호명령 변경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89조를 준용  
한다.

⑥ 법 제52조, 제47조제1항제4  
호, 제5호 및 제5호의2의 임시  
보호명령이 있는 다음 피해아동  
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임시  
보호명령을 한 법원·지원의 관  
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  
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  
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임  
시보호명령의 수탁기관을 관할  
구역 외 법원·지원의 수탁기관  
으로 변경할 수 있다.

<삭 제>

고) 임시보호명령 및 그 변경 ·  
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  
된 경우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제100조(항고의 취하) ① 법정대  
리인이 있는 행위자 또는 피해  
아동이 항고를 취하할에는 각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  
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  
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행위자의 동의를 얻  
어,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보  
조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  
동의 동의를 얻어 각 항고를 취  
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03조(준용규정) 피해아동보호  
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  
하여는 제57조, 제60조부터 제6  
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9조(재판정본의 교부) ① 배

제100조(항고의 취하) ① -----  
-----  
----- 취하할 때 -----  
-----  
----- . -----  
-----  
----- .  
-----  
② -----  
-----  
-----  
-----  
-----  
-----  
----- . 단, 피해아동의  
나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  
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  
로 한다.

제103조(준용규정) -----  
-----  
----- 제57조, 제58조 -----  
-----  
----- .

제109조(재판정본의 교부) ① ---

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상급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집행력있는 정본의 부여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  
-----  
----- 집행  
력 있는-----  
-----  
-----.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7631